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5402

발의연월일: 2024. 11. 8.

발 의 자:최민희·이정헌·복기왕

박해철 · 김한규 · 채현일

이재관 • 김남근 • 전형희

이후기 • 조인철 • 이광희

황정아 · 김 윤 · 한민수

주철현 · 김문수 · 황명선

이용우 • 문금주 • 서영교

김 현·양부남·김성환

의원(2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에서는 대통령에게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수 있도록 하면서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면법」에서는 헌법에서 정하지 않은 특별사면 제도를 두고 국회의 동의 없이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정권의 이해관계와 정치적 고려에 따라 사면 여부가 결정되거나 재벌총수 등 특정 집단을 위해 특별사면이 행사되는 등 남용되는 사례가 많아 사회적 논란과 함께 국민 법감정에 반한다는 지적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탄핵으로 파면된 자, 헌정질서 파괴범죄를 저지른 자, 특정범죄·특정경제범죄를 저지른 자, 성범죄자, 대통령의 배우자 등에 대해특별사면을 할 경우에는 헌법에서 규정한대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하여 사면이 기득권세력의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함(안 제9조).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특별사면, 감형 및 복권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1. 「헌법재판소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파면 결정을 선고받은 자
- 2.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헌정질서 파괴범죄를 저지른 자
- 3. 민간인 학살, 인신매매, 민간 항공기·선박 납치 등 반인륜적 범죄 또는 반인도주의적 범죄를 저지른 자
- 4.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죄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죄를 저지른 자
- 5. 「형법」 제250조의 죄로서「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에 규정된 집단살해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자
- 6.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부터 제305조까지의 죄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죄 및 「성폭력범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1조까지의 죄를 저지른 자

- 7.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의 죄를 저지른 자
- 8.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특별사면 등의 실시) 특별	제9조(특별사면 등의 실시)
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은 대통령이 한다. <u><단</u>	
<u>서 신설></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에 대하여 특별사면,
	<u> 감형 및 복권을 명하려면 국회</u>
	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u><신 설></u>	1. 「헌법재판소법」 제53조제1
	항에 따라 파면 결정을 선고
	<u>받은 자</u>
<u><신 설></u>	2.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2
	조에 따른 헌정질서 파괴범죄
	를 저지른 자
<u> <신 설></u>	3. 민간인 학살, 인신매매, 민간
	항공기・선박 납치 등 반인륜
	적 범죄 또는 반인도주의적
	범죄를 저지른 자
<u> <신 설></u>	4.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
	조까지의 죄와 「특정범죄 가
	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
	조부터 제4조까지의 죄를 저
	<u>지른 자</u>
<u> <신 설></u>	<u>5. 「형법」 제250조의 죄로서</u>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
	에 관한 협약」에 규정된 집
	단살해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
	<u>지른 자</u>
<u><신 설></u>	<u>6. 「형법」 제297조, 제297조</u>
	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
	지, 제301조의2, 제302조부터
	제305조까지의 죄와 「아동・
	<u>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u>
	률」 제7조, 제9조부터 제12
	조까지의 죄 및 「성폭력범죄
	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1조까지의 죄를
	저지른 자
<u> <신 설></u>	7.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
	에 관한 법률」 제3조부터 제
	5조까지의 죄를 저지른 자
<u><신 설></u>	<u>8.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u>
	내의 친족
	I.